

제 335회 임시회
환경수자원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 안 번 호	3581
------------	------

-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
 '24년 4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으로
 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이 허용됨에 따라,
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
 한강공원 내 통행 허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입니다.
 이에 따라,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 규정을 신설하되,
 이용객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
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